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의안 번호	2003~7
----------	--------

제안연월일	2003. 2.
제안자	거창군수

■ 제정이유

-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 소비생활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다변화됨으로써 생산자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하고
- 소비자문제를 기존시각에서 탈피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소비자 단체의 지원등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안 제3조)
 -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군수의 의무(안 제4조)
 - 소비자 안전대책 강구
 -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소비자의 권리보장(안 제2장)
 - 위해물품등의 제공금지
 - 규격표시등의 적정화
 - 부당거래의 금지
 -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 및 처리
 -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자료제출 및 검사
 - 소비자 단체의 지원 및 업무 범위 규정등
- 소비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장)

■ 제정근거

- 소비자보호법 제5조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 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 장소·가격·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군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군수의 의무)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 안전 대책의 강구
2. 소비자 정보제공과 교육의 활성화
3. 사업자의 소비 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공 유도
4.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의 방지 대책의 강구
5. 소비 생활 관련 주요정책 결정에 소비자 의사의 반영
6. 소비자 피해의 구제상담
7.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8.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위해의 방지, 적정한 계량 및 규격의 사용 표시기준의 준수와 공정한 거래의 확립 등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보호 시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고충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보호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소비자 권리의 보장

제1절 위해의 방지

제7조(위해 물품 등의 제공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과기 또는 제조·수입·판매 등의 중지와 당해 용역의 제공 금지를 권고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거·과기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비자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 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8조(규격·표시 등의 적정화) 사업자는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적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성분·구조·형태·치수 및 중량 등에 대한 적정한 규격에 따를 것.
2. 품질·기능·제조연월일·보존기간·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가격·단위 등을 적정하게 표시할 것.
3. 적정하게 계량하고 중량을 명시하도록 할 것
4. 내용물의 보전 또는 품질 보전의 한도를 넘는 포장, 내용물의 가격에 비하여 필요 이상으로 비용이 들어간 포장 등 과대 포장을 하지 아니할 것
5. 보증 기간, 수리의 내용 등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적정하게 명시할 것

제9조(자동판매기의 관리) 사업자는 상품 등을 자동판매기(이하“자판기”라 한다)에 의해 공급할 때에는 해당 자판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곳에 설치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하여는 그 관리자의 주소·성명·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준수 기준 설정

제10조(사업자 자율기준의 설정) ① 사업자가 조직하는 단체(이하“사업자단체”)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 (이하“자율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율기준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군 기준의 설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율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자율기준의 내용이 그 설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율기준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관계사업자의 상당 부분을 점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장에서 설치 규정한 거창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고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표를 한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거래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판매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거나,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설득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게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의 경솔한 판단이나 부주의·무경험·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소비자나 소비자의 가족을 기만하거나 협박하는 등 부당하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행위
 5.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등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중지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절 가격동향 등의 조사 및 정보제공

- 제13조(가격동향 등의 조사)**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정된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요 생필품의 생산·유통 등의 실태를 조사함과 동시에 가격 및 수급 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소비자의 소비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정보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소비자에게 정보제공·교육실시 등)** ① 군수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정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 및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소비자 피해의 구제

제15조(피해구제 청구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 및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소비자 단체에 서신·방문·전화 및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이나 소비자 단체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교환·환불·시정 및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사업자가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동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전에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피해 구제기준) 소비자 피해의 구제 기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다.

제17조(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군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법 위반사실의 공표 명령)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 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물품제조공정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당해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내용과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사업자에게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립검사기관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통보 받을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공포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5절 소비자단체의 지원

제20조(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
7. 사업내용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소비자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 시험검사 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 및 조사를 의뢰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의 지급기준·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22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① 소비자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의 실시
3.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소비자의 교육
4.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5. 기타 군수가 위탁하는 사항

②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분석 등의 결과를 공표 할 수 있다. 다만, 공표 되는 사항 중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 등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인 경우에는 국·공립 검사 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계량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 기관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공표 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의 결과를 공표 할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소비자단체는 법 제5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이름(상호 기타의 명칭을 포함한다), 거부 등의 사실과 그 사유를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 할 수 있다.

⑤ 소비자 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⑥ 소비자 단체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3장 거창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23조(설치)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군의회의원과 소비자단체·유관기관·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와 학계,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상공가스담당으로 한다.

제2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질병·장기불출석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비자보호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4. 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상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용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6조제4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 받은 간사는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견청취 및 출석요구)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출석시켜 설명을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참석한 위원·실무위원 및 출석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32조(보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거창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위촉된 물가대책 위원과 실무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